

2026

국제무역사, 관세사 대외무역법

엠북 자격증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56분 완성

도서명 : 대외무역법

ISBN : 979-11-7393-166-6

발간일 : 2026-01-08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9,000원



대외무역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통상의 진흥(p13)

제3장 수출입 거래(p18)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p69)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p76)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p80)

제6장 보칙(p85)

제7장 벌칙(p92~100)

[약어]

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행정기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장관등은 장관, 행정기관장

허가조건은 장관등이 정한 허가 조건

수출입은 수출, 수입

허가등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중개허가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 도모
-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2. 정의

가. 무역은 다음(이하 물품등) 수출/수입

1) 물품

2) 용역

a) 용역(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포함)

b)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장관 고시 업종의 사업 영위자가 제공하는 용역

c) 국내 법령, 한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양도,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
-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 정보 등으로 장관이 고시하는 것
- 상기의 집합체,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것

나. 물품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다음을 제외한 동산

1) 지급수단

a)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b) **증권 아닌**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전신의한 지급지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c) 증표, 플라스틱카드, 물건에 전자/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 지급을 위해 통화를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증권

- 지급수단 아닌 증권과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증서로서 투자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3) 채권을 화체한 서류

다. **무역거래자는** 수출이나 수입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나 수출자의 위임 받은 자,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 수출입행위 전부/일부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라. 정부간 수출계약은 외국 정부가 요청시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국내 기업 대신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단,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을 유상 수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

3.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가) 원칙: 한국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조약등**)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조장

나) 정부는 법, 다른 법률, 조약등에 무역 제한 규정이 있는 때 제한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운영 요

4. 장관의 무역 진흥을 위한 조치

가) 물품등 수출입을 지속적 증대하는 조치 가능

나) 다음 지원 가능

- 무역 진흥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업자
- 무역전시장, 무역연수원 등 무역 시설 설치/운영 자
-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 구축/운영 자

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장관은 다음 경우 물품등 수출입 제한/금지 가능

가) 한국, 한국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 천재지변

나) 교역상대국이

- 조약등에서 정한 한국의 권익 인정안함

- 한국의 무역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

부담/제한 가함

다) 조약등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

- 물품등 수출입, 경유, 환적, 중개 제한/금지
가능

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우려)

마) 인간의 생명/건강, 안전, 동식물의 생명/건강, 환경보전, 국내 자원보호

6.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가) 무역에 관해 법 따름

나) 행정기관장은 물품등 수출입을 제한하는 법령, 훈령/고시 등(이하 수출/수입요령)
제정/개정시 미리 장관과 협의 요

- 장관은 행정기관장에 수출/수입요령 조정
요청 가능

제2장 통상의 진흥

7~9조

1. 통상진흥 시책

가. 장관

- 1) 무역/통상 진흥을 위해 매년 다음 연도
통상진흥 시책 수립 요
- 2) 내용
 - 통상진흥 시책 기본 방향
 - 국제통상 여건 분석/전망
 - 무역/통상 협상 추진,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통상진흥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통상 정보수집/분석 활용
-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 무역/통상 진흥 관련 기관/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 장관 인정 통상진흥 시책

3) 통상진흥 시책 수립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교역상대국의 통상 제도/관행,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조사 가능

4)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통상진흥 시책 수립
자료 요청, 지원 가능

5) 시책 수립시 미리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의견 청취, 수립한 때

시도지사에 통지 요

- 변경한 때도 같다

나. 시도지사

- 관할 구역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 수립/시행 요

- 수립/변경한 때 장관에 통지 요

2. 장관의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가) 무역/통상 기관/단체가 교역상대국 정부,

지방정부, 기관/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